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7.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8월 14일, 정혜경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8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5. 9. 2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 3. 12.)

상정, 축조심사

제434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 4. 2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4회국회(임시회 · 폐회중) 제1차 전체회의(2026. 4. 29.)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혜경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을 증권 매매나 대여를 통해 관리
·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이른바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책임투자를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고, 적용 범위를 증권의 매매나 대여를 통한 관리·운용 방법에만 국한시키는 한편, 목적을 안정적인 수익 증대로 귀결시키고 있어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증권의 매매 및 대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기준 및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그 목적을 수익 증대가 아닌 기금의 공공성 확보로 규정함으로써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현행법 제102조제4항은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관리·운용할 때 ESG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인데, 개정안은 이를 강행규정으로 하여 ESG 투자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그런데, 보험료율을 인상한 최근의 모수 조정에도 불구하고 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과 현행법에서 ESG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 목적은 제102조제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

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일부 투자방법에 대하여 ESG를 의무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것이 국민연금 급여 지출을 위한 책임준비금인 기금 운용의 수익성을 높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미칠 영향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한편 개정안은 현행법 제10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증권의 매매·대여' 외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도 ESG 투자를 적용하려는 것인데, 수시입출식예금(Money Market Deposit Account; MMDA) 등 현금성 자산은 급여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신속하게 유동화될 수 있는 환금성이 중요하다는 점, 금융투자상품지수(예: KOSPI200)는 투자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점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기금 증식 사업' 중에는 ESG 투자 적용이 부적합한 투자 방법·대상(예: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이 혼재된 점 등과 제3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4. 11. 10.) 심사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

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및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투자방법에서 제외한 경과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개정안은 기금 관리·운용의 원칙에 ‘공공성 확보’를 추가·명시하려는 것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 우리나라 국민경제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함으로써 기금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기금관리주체가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상의 일반원칙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다만,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연금보험료 수입 감소를 대체하고 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기금 운용 수익의 증대가 중요하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수익성’은 자산군별 평균 수익률 등 구체적인 수치를 통하여 목표 달성 여부 및 그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평가할 수 있지만, ‘공공성’은 불확정개념으로서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볼 측면이 있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의 최대 증대를 최우선 가치로 고려하며 관리·운용되어야 하므로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의 ESG 투자를 의무화하는 강행규정으로의 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 ESG 투자와 기금투자수익률이 반드시 상충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시 ESG를 고려함으로써 수익성에 미칠 장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ESG 투자의 원칙이 법률에 규정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도 ESG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각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